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년 6월 22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1년 5월 25일
- 나. 제안자: 황영호 의원 외 7명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2일
- 라. 상정일자: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 6. 1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황영호 의원)

□ 제안이유

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
“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·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
관한 조례”로 변경(제명)
- 나. 용어 정의, 조직 구성 및 임무에 외국인치안봉사대에 관한 사항을
신설(안 제2조 ~ 안 제4조)

다. 활동범위, 경비지원 등 규정(안 제5조 ~ 안 제6조)

라.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한 경과조치(부칙 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2)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

3)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

4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

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(2021.5.27.~2021.6.1.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가. 개정 취지

- 범죄 예방활동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임무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○ 제명 변경

- ‘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를
‘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·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 및
지원에 관한 조례’ 로 변경

○ 용어 정의 규정(안 제2조)

- “외국인 등” 및 “외국인 치안봉사대” 에 대한 정의 규정

○ 치안봉사대의 임무 및 활동 범위 규정(안 제4조 ~ 안 제5조)

-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 및 치안 업무 등 임무 규정(안 제4조)
- 치안봉사대의 활동범위는 강서구 관내로 함(안 제5조)

○ 경비지원에 관련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- 치안봉사대의 경비 지원 및 지원금 가감, 예산지원 중단 등 근거 마련
(안 제6조제1항 ~ 안 제6조제3항)

다. 종합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외국인 등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치안봉사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

- 기존 ‘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에 외국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신설하는 내용이며,
-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‘외국인 치안봉사대’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구는 17개구¹⁾이며, 미제정 구는 7개구임.

○ 주요 개정사항으로는

- 제명 ‘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를 ‘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·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로 변경하였음.

1)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현황(【붙임1】 참고)

(21. 4월 기준)

조례 제정·개정(17)		미제정	비고
별도 외국인 치안봉사대 조례 제정	기존 자율방범대 조례에 외국인 항목 추가 개정		
6개구	11개구	7개구	

- 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

- 제2호 “외국인 등” 이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하고, 제3호에 외국인 치안봉사대 정의를 규정하여 외국인 관련 용어를 신설하였고,

- 안 제3조 조직 및 구성과 관련하여서는

-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 비율(2.3%²⁾)을 감안하여 각 동에 조직하기 보다는 구에 1개의 조직을 편성·운영토록 하였으며,

-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치안봉사대의 임무와 활동범위를 규정하여

-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강서구 관내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각종 범죄예방 활동 및 보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명시함.

- 안 제6조의 경비지원과 관련하여

- 치안봉사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

- 부칙조항 안 제2조(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경과조치)에서는

-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치안봉사대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하였음.

2)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

외국인 주민수(인구 대비 비율)

서울(17)	영등포구 55,524명(14.1%), 구로구 54,937명(12.6%), 금천구 32,851명(13.2%), 관악구 30,247명(6.0%), 광진구 23,823명(6.6%), 동대문구 23,645명(6.7%), 용산구 22,332명(9.8%), 동작구 20,697명(5.2%), 서대문구 18,179명(5.7%), 성북구 17,976명(4.0%), 마포구 16,416명(4.4%), 종로구 14,195명(9.2%), 송파구 14,126명(2.2%), 성동구 14,042명(4.7%), 중구 13,796명(10.5%), 강서구 13,197명(2.3%), 강남구 11,735명(2.3%)
--------	---

- 정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‘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’을 발표한바 있고, 그 주요내용 중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95개 경찰서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·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.
- 우리 구에서도 “외국인 치안봉사대”가 치안보조 인력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들을 지원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근거법령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나,
-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 공동체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내외국인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참고

‘외국인 치안봉사대’ 관련 타 자치구 현황

2021. 4월 기준

연번	자치구명	관 련 조 례			개정(제정)일	비고
		유		무		
		제정	개정			
1	중구	○			18.11.20	
2	광진구	○			18.12.31	
3	중랑구	○			18.09.20	
4	은평구	○			19.07.18	
5	서대문구	○			18.05.02	
6	양천구	○			18.12.18	
7	영등포구	○			18.11.08	
8	동작구	○			18.11.12	
9	관악구	○			20.12.31	
10	서초구	○			19.05.30	
11	강동구	○			18.10.04	
12	성동구		○		19.09.17	
13	성북구		○		20.10.05	
14	강북구		○		20.11.13	
15	도봉구		○		18.10.25	
16	노원구		○		18.05.25	
17	구로구		○		19.03.28	
18	종로구			x		
19	용산구			x		
20	동대문구			x		
21	마포구			x		
22	금천구			x		
23	송파구			x		
24	강남구			x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한외국인“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2. “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“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결혼이민자“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.

□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4. 4., 2015. 12. 1.>

1. “다문화가족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2. “결혼이민자등“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
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
3. “아동·청소년“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